

<의안번호 제2006 - 41호>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8. 22.

2. 개정이유

-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 중 폐지된 내용 삭제와, 체계가 맞지 않는 각 호의 순서를 일괄정비 개정.
- 지방세의 결손처분시 건당 5백만원이상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체납결손 처분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 다른 조례, 규칙, 규정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한 사항을 신설하고(안 제7호), 이와 관련된 현행 3개호를 삭제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함.
 - 지명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 삭제(현행 제13호)
 - 거창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삭제(현행 제16호)
 - 거창군지도방문조정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한 지도방문조정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삭제(현행 제17호)

- 기능이 상실된 결정사항 3개호를 삭제함.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현행 제4호)
 - 1972년도 제정된 조례로 현실과 부합되어 삭제
 -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가능하며, 행정심판의 심의는 도 심의사항임.
 -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현행 제14호)
 - 2000. 7. 19일 신설된(현행 제16호)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현행 제15호)
 - 2005. 1. 15일 조례 폐지되어 심의사항 삭제
- 건당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호).
 - 경상남도에서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당 5백만원 이상 결손처분시 시군조정위원회 심의 권고사항으로 체납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
- 신설 및 삭제로 체계가 맞지 않는 각 호의 순서를 재배열함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2항 및 제15조
 - ※ 경상남도 세정과-3206(2006. 3. 27) 조례개정 권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내용 중에 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 및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함과, 건당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액의 결손처분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세부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안 제3조(결정사항)중 제4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삭제 건은 이의신청은 각 개별법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하고, 행정심판은 도의 심의사항으로 군에서는 의견제출만 가능한 것으로써 1972년도 제정된 조례로 그 동안 현실과 불부합 되고 있는 부분을 금번 개정시에 삭제하는 것이며,
 - 제14호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삭제 건은 「거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의 내용과 현 16호와 중복된 부분으로 삭제하는 것이고,
 - 제15호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삭제 건은 조례명이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 제13호 지명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과 16호 거창군민원조정 위원회운영규칙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및 17호 거창군 지도방문조정심의회운영규정에 의한 지도방문조정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의 3건은 개별적 조례, 규칙, 규정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을 또다시 결정 사항에 나열하기 보다는 하나로 통합신설하려는 것이며,
- 제18호 내용중 “보안업무 심사위원회”을 “보안 심사위원회”로 현실에 맞도록 자구 수정한 것이고,
- 제9호 건당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건은 현행 결손처리(행방 또는 재산조사·확인→ 증빙서류 구비→ 결손) 절차를 건당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한해서는 시군조정위원회 심의후 처리토록 결손처분 처리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에서 권고된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사료되며,
- 제7조의 2(정책자문단운영위원회)와 제8조(실비변상)의 내용중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은 기존 제7조의 1을 규정에 맞도록 조의 번호를 개정한 것과 개정된 맞춤법에 맞게 낫표와 띄어쓰기를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이나 관련 조례와의 중첩여부 및 조례안 개정시에 제반사항 등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의안번호 제2006 - 42호>

거창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8. 22.

2. 개정이유

- 2005년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부서 이관 및 담당 명칭 변경
- 기존 “정보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의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이 대폭 규정된 상위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를 체계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명 앞뒤를 낫표(「 」)를 사용하여 구분하게 함(안 제1조).
 -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 촉진 기본법」”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개정

- '05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 부서 명칭 변경(안 제10조 제3항).
 - “정보통신담당주사”를 “정보화담당주사”로 개정함.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2005년 5월 “일 중심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화기능을 기획분야의 부서로 이관, 업무담당 명칭이 변경됨과, 기존 “정보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개인정보의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상위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를 체계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으로,
-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시 부서이관 담당명칭 변경 및 상위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형식이나 체계를 준수, 개정된 법률명으로 변경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의안번호 제2006 - 43호>

거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8. 22.

2. 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선발기준·업무·권한·복무자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내지 제11조).
- 나. 고충민원의 처리준칙·대상·분류·신청 및 처리기간·접수 및 처리절차·사후관리 등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2조 내지 제28조, 제22조 내지 제34조).
-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의결·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9조 내지 제31조).

- 라.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보호활동 등에 관한 규정(안 제55조 내지 제40조).
- 마.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에 관한 규정(안 제41조 내지 제43조).
- 바. 지방세행정의 제도개선 의견 및 건의수령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및 제45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71조의 2
 - ※ 표준 조례안 시달 : 행정자치부 재정세제본부-2253(2006. 4. 19)
경상남도 세정과-4095(2006. 4. 21)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2006. 5. 25 ~ 6. 15)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05. 12. 31일 지방세법 제71조의 2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후속적인 조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의 세부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권리구제 수단이 심사청구, 행정심판 등 사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구제함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납세보호관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체적 보호절차와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 동 조례안이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조례로 정하기에는 다소 무리와 그 입법정신에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서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8조(인사우대 등)에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 보호담당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승진 등 인사상에 있어서 우대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인사관련 개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부령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나 거창군 근무평정 실적가점 운영 등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여 실현될 수 없는 사항이며,
- 안 제15조(고충민원의 분류) 제1항에서 ‘도에서 처리하여야 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동 조례안에서 적시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46조(보고)에서 ‘군수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상담 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부분이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이 밖에도 여러 조항(예: 제2장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 권한, 교육의무, 복무자세, 제3장 고충민원처리, 제4장 세무상담, 제5장 납세자 권리헌장, 제6장 지방세 제도개선, 제7장 보고)들이 조례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보다는 내부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동 조례안은 현재 2006. 4. 21일 경남도청(세정과-4095)에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시달하여 이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그 취지와 입법정신에 다소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고 관계 조문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8월말경이나 9월초순경에 16개 시도의 관계자 회의를 붙여 이를 재검토 보완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이를 추진 보류중에 있음

※ 16개 광역자치단체중 1개도(전남)에서 조례 제정하였고, 1개시(인천)가 추진하고 있으며, 14개시도가 미추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도내 20개시군에서도 5개시군(마산, 통영, 양산, 거제, 함양)이 조례 제정하였으나, 5개시군(진주, 사천, 함안, 창녕, 고성, 김해)이 미추진하고 있는 상태임.

- 자료제공 : 도청 세정과 동조례추진 업무담당 주사 0 00

-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그 제정에 있어 제정의 주체인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재검토하기 위해 의견수렴 중에 있고, 광역자치단체 대다수가 미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내용이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물론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로써 제정하도록 함에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많으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지방세법】

제71조의 2 (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고충민원의 처리)①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이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을 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안번호 제2006 - 44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8. 22.

2. 개정이유

-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제도가 200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안 제9조의 2 신설).
 - 대 상 : 채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결손처분액 + 채납액)이상인 고액 상습채납자
 - 공개 대상자 심의요청 절차 등 : 규칙으로 정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69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06. 5.8 ~ 5.28)결과 : 의견 없음.

※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운영방안 통보
【도 세정과-2355 (2006. 3. 7)】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조례안 제9조 2항의 신설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제도적 규정을 마련코자, 개정된 「지방세법」 제69조의 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의 2항의 근거와 2006년 3월 7일 경상남도로부터 본제도의 운영방안 통보(세정과-2355호)에 의해 조문을 신설하는 후속적인 조치로써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8. 22.

2. 개정이유

-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중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확대 함(안 제2조). ----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을 포함
-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 및 명확히 함(안 제3조).
 - 현행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던 것을 경과 기간에 따라 세분화 하여 차등지급하도록 하였음.(1년경과 100분의 1, 2년경과 100분의 3, 3년이상 경과 100분의 5)

- 계약직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 개인별 월 지급한도액 신설함 (안 제4조).
- 징수포상금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거창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함(안 제5조).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징수포상금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징수유예 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지급명령의 종류)
 - ※ 표준안 시달 :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 통보
[경상남도 세정과-3473(2006. 4. 4)호]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2006. 6. 23 ~ 7. 18)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에 있어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심사 방법 등이 시군별로 상이하고, 감사원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인 체납세 징수노력과 관계없이 과년도 체납액(미수액) 전체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의 부당지급 사례와 포상금 지급시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 부족사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이 시행될 시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 기대됨.

○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 안 제2조(지급대상)중 제1항 제1호에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도록 신설한 것은 그동안 일상적인 징수업무관련 체납액 징수시에 지급하던 포상금을 특별공적(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 안 제3조(지급기준)과 제4조(지급한도)를 신설한 것은 현행 회계연도말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3%, 2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5%를 지급하였으나 이를 차등지급토록 재조정(1년경과: 1%, 2년경과 2%, 3년이상 경과: 5%)한 것이며,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안 제5조(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를 신설한 것은 징수포상금 지급시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거창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 것임.
- 이밖에도 제6조(대장비치), 제7조(지급신청), 제8조(지급) 및 제9조(환수) 등은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필요한 조항으로써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방법, 환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써 차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사료되었음.

○ 따라서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신설 1994.12.31>

1. 고지유예 : 납기개시전에 법 제4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처분 등의 유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등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사유가 발생하여 체납처분등을 유예하는 경우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안으로 하고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다. <개정 199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법 제4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의 요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중의 분납기한과 금액은 관할시장·군수가 정한다. <신설 1984.12.31, 1994.12.3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지급명령의 종류) ①지급명령은 통상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및 집합지급명령의 3종으로 한다.

②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③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④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의안번호 제2006 - 52호>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3차)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8. 22.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2006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가조보건지소 이전신축 및 위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m²/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및지목	수량	예정금액	비고
취득	건물	가조면 마상리 345-3		건물	351	527,608	가조보건지소
	토지	당초	위천면 장기리 522-4	답	1,555	90,000	위천소방파출소
		변경	위천면 장기리 509		답	2,509	

나.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취득대상 목록

(단위 : m²,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 고
	구분	소 재 지	수량					
1	건물	가조면 마상리345-3	351	527,608	2006	이전 신축	거창군	
2	토지 (답)	위천면 장거리 509	2,509	155,000	2006	장소 변경	거창군	공시지가 ⇒59,463

4. 참고사항

-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5. 검토의견

◆ 가조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 현 가조면 보건지소는 1990년 건립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천정 누수 등 건물이 노후되고 건물협소 등 진료환경이 열악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위치를 마상리 345-3번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본 사업은 200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확정되어, 현 168m² 규모의 노후한 보건지소에서 면사무소,농협 등 유관기관이 연접한 기 확보된 균유지(대지)에 지상 2층의

351㎡로 건물을 이전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소요사업비 527백만원 중 건축비(국비 318백만, 도비 159백만)는 확보되었으나, 군비(부대사업비 등) 50백만원을 '06년 제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보건복지부[도 보건위생과-37511('05.12.30)대상기관 확정 및 도 보건위생과-23641('06.8.11)보조금 교부결정]의 대상지 선정 협조에 의한 것으로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본 사업이 완료되면 면지역 중 유일한 의약분업지역으로 상주인구(4,605명) 및 보건기관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행정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나,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시설확장·개선 등을 통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봄.
-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편성전에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5년 9월 12일 '06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지(가조보건지소,아주보건진료소)가 선정·신청되었으나, 사업 확정 통보(국·도비 내시)가 지연됨에도, 사전에 예측하여 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바람직 하나, 향후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변경(구입)

- 위천소방지서는 본서와 15km이상 떨어져 있어 소방행정추진에 취약하여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현 소방지서를 소방파출소로 승격코자 파출소 부지를 군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6일 제2차 정례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 '06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90,000천원을 편성 추진중 당초대상지가 대형소방차량 통행등 소방파출소 이전부지로 부적합하여 거창소방서와 업무협의를 및 관계자 간담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 신축부지를 변경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본 사업의 변경 필요성과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선정부지(위천면 장거리 509번지, 470평)는 도로와 이격되고 진입도로 폭(4m)의 협소 등 소방취약요인이 상존하고 있어,대형소방차량의 출동용이 및 시가지면모 쇄신 등을 위해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거창소방서에서 도로와 연접한 변경부지(위천면 장거리 509번지, 759평)에 도비 6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상 2층(150평)의 소방파출소(금년중 소방지서→ 소방파출소로 승격 확정)를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부지 위치변경에 따른 총 부지 매입비 155,000천원(기확보 90,000천원) 중 부지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부족)예산 65,000천원을 '06년 제1회 추경시 확보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 변경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건축면적에 비하여 다소 부지면적이 과다하나, 주요 도로 및 유관 기관과 연접하여 위치적으로 양호하며, 본 사업이 완공되면 장래 시가지 조성 및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효율적인 지역 소방업무추진으로 주민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봄.
- 그러나 당초 소방파출소 건립부지였던 위천면 장거리 522-4번지 토지소유자 조동규(북상면 월성리 1205번지)씨와 사전 행정적 협의 과정에서 동의서 장구 등의 진행이 있었는데, 금번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논란의 소지에 대하여는 조치한 이전 사항이나 조치계획이 있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소방관련 행정은 도에서 담당하는 사무로 종전 소방관련 시설건립시 부지는 해당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건물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여 해당 시·군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의 선행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소방관서의 부지·건물의 관리 및 예산지원 등이 일원화 되도록 도의 관련부서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건의·협의 등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0.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4. 이미 보유중인 부동산의 종물 또는 공작물의 대체설치

③제1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 2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3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6.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 기부조건으로 건축행위 관련법 (위천소방파출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구거·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할 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기부 또는 원상회복할 것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5. 제29조제1항제14호·제20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해 대부기간의 만료시 그 대부받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8. 잡종재산을 신탁에 의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공유재산의 공중·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현 가조면 보건지소 현황

-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42-8 번지
- 규 모 : 부지 378m², 건물 168m² (지상 1층)
- 건물구조 및 건축연도 : 조적조, 1990년

□ 현 위천면 소방지서 현황

- 관할지역 : 6개면(주상, 응양, 고제, 북상, 위천, 마리면)
- 소방인력 : 1일 소방관 1명 근무(24시간 교대근무)
- 소방장비 : 소방펌프차 1대
- 현 청사위치 :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522번지
- 부 지 : 661m² (거창군 소유)
- 건 물 : 162m² (RC조, 스라브1층, 1998년 준공)

<의안번호 제2006 - 46호>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6. 8.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6. 8. 22.

2.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제정 2005. 12. 23, 법률 제7739호)이 공포되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기능에 추가로 신설함 (안 제2조1항 제5호).
- 다. 대표협의체 임명직 위원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3조 제2항).

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항, 제7항).

마.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군수에서 군수로 조정되어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4항).

바. 회의록 기록·작성시 의결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 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1조의 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관련조례개정 자료 통보 : 경상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4515호
(2006. 2. 24)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2006. 3. 20 ~ 4. 10)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긴급복지 지원법」이 2005. 12. 23일 법률 제7739호로 공포되고, 2006. 3. 24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의 세부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 안 제1조 목적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추가한 것은 동 조례안의 제정관련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 안 제2조 제1항 제5호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함은 관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삽입한 것이고
 - 안 제3조 제2항 내지 제7항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면서 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관련조항을 업무흐름의 중요도에 따라 재배열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 안 제9조 제4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협력체로,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개별법령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의 상위 심의기구임을 들어 사회복지분야 각종 위원회의 장이 자치단체장임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관계와 위원장간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서 금번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으로 하도록 공문시달되어 부군수에서 군수로 조정,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내용이었음.
 - 기타 제10조의 회의록 기록·작성시 의결사항과 제13조의 공청회 및 세미나를 공청회 또는 세미나로, 제14조의 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수정하는 것은 법령문의 올바른 띄어쓰기와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당해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④시·군·구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하고 위원회 위원 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의 임명이나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 ④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⑤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 [본조신설 2003.7.30]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 제1조의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조의4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이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